「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23일, 남진삼 의원 발의

○ 회부일자: 2026년 10월 8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10월 13일 상정・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남진삼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❍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선임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, 수당・여비 등 실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절차 정비(안 제2조, 제3조)

나. 결산검사위원의 결격사유 구체화(안 제4조)

다. 검사기간 연장 절차 정비(안 제5조)

라. 결산검사위원 수당・여비 등 지급기준 정비(안 제11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구성과 선임·운영 절차를 정비하고 위원의 이해관계 제한 및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시·군 및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수와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이에 따라 위원 정수를 7명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 절차를 정비하고, 안 제4조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였음. 또한, 안 제5조에서 검사기간 연장 절차를 의장의 승인으로 간소화하였으며, 안 제11조에서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
❍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구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, 이해관계 제한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므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「없음」